#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80 제출년월일 : 2016. 1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O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위법성을 해소 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
  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
- 부칙
  -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인용제명 수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, 제10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### 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###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"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"를 "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제95조"를 "제104조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- ②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4조 중 "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③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・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 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④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제26조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⑤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⑥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⑦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⑧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
제22조제1항 단서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

-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- ⑨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제3항 후단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⑩ 평창군 효석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제24조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① 평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②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 중 "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"를 "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"로 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	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
조례	관리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	제1조(목적)
법 <u>제95조</u> 및 행정권한의위임위	<u>제104조</u>
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	
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권	
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	
산하기관이 아닌법인 • 단체 또	
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	
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	
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	
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	
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### 4. 작성자

작 성 자	자치행정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210